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6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박희승의원안)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1.
- (3) 회 부 일 : 2024. 8.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있음. 한편, 그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 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더욱이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5% 수준으로 농가(59.1%), 어가(67.7%)보다도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임가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박희승의원안)

현 행	박희승의원안
☐ 비과세 사업소득 (제12조제2호)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신 설> ○ <신 설>	☐ 임목벌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 임산물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 박희승의원안 2024. 8. 1. 제출(의안번호 2463)

☐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수입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¹⁾.

☐ 현행 법령에 따른 농업·어업·임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먼저 농업소득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²⁾되고, 수입금액 10억원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인 작물재배업소득,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그 외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어업소득은 당초 어로어업만을 주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나,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한도를 연 5천만원까지 확대하였음.

한편, 임업소득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업·어업에 비해 임업 관련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낮고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임업 관련 비과세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농·어가 대비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농·어가 가구소득 대비 임가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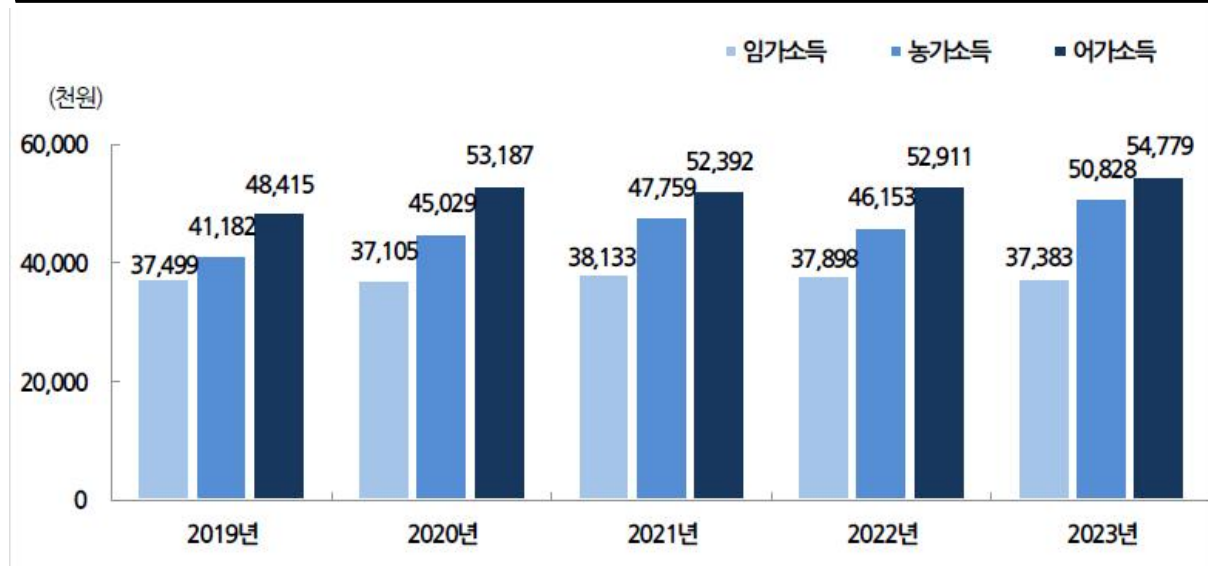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에는 농가의 73.5%, 어가의 6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3년간 임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³⁾ 임가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가소득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어가소득	48,415	53,187	52,392	52,911	54,779
임가소득	37,499	37,105	38,133	37,898	37,383
임가/농가소득(%)	91.1	82.4	79.8	82.1	73.5
임가/어가소득(%)	77.5	69.8	72.8	71.6	68.2
임가부채	28,334	28,912	27,294	27,618	29,141
임가 소득대비 부채비율(%)	75.56%	77.92%	71.58%	72.87%	77.95%



자료: 통계청(「농가·어가 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 경제조사」)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조세부담률 상승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2021년 71.58% → 2022년 72.87% → 2023년 77.95%

현행 비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199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⁴⁾가 1995년 51.99에서 2023년 111.59까지 상승한 반면 비과세 한도는 약 20년째 동결되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당초 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되 연 50만원(1975년)까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다가 1989년 150만원, 1995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

이후 2007년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면서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목 벌채 등에 따른 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뒤 현재까지 비과세 한도가 불변인 상황으로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3년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연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임업 관련 비과세소득 한도 600만원은 농업·어업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업종 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주요 농업·어업·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농업	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전액 비과세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축산업	소 사육업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양돈업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70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4) 2020년도 소비자물가지수=100 기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임업	임목 벌채·양도 소득	-	연 600만원 이하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가구당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임가의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비과세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구 당 조세부담률]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 가	1.6	1.3	1.9	1.4	1.1
농 가	2.9	2.4	2.8	3.2	2.4
어 가	1.5	1.4	2.2	1.4	1.5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가구소득

자료: 통계청(「농가·어가 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 경제조사」)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신설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임업 관련 비과세 한도는 과거 산림소득을 분류과세할 당시 설정된 소득공제 한도로서 현재 산림소득이 종합소득(사업소득)에 통합된 만큼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연혁을 고려하여 비과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임

업 관련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54
